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76호 2011. 6. 1(수)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952호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953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사천시 조례 제954호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 -----	5
○ 사천시 조례 제955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956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사천시 조례 제957호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958호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14
○ 사천시 조례 제959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491호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32
○ 사천시 규칙 제492호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4
○ 사천시 규칙 제493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9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1-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사항 고시 -----	44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1-300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	45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95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4조의2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의 별표 중 용현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3)

[별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용현면	구월리	구월리 일원(687-1, 687-2, 690-5, 693-1, 702-1, 703, 704번지 등 7필지 4,645㎡제외)
	송지리	송지리 일원(194-1, 245, 377, 379-6, 380-5, 380-6, 381-1, 382-6, 530, 684-11, 693-13, 910-1, 910-3, 910-11, 1185-6번지 등 16필지 5,003㎡ 제외)
	금문리	금문리 일원(2-18, 2-19, 2-20번지 등 3필지 114㎡ 제외)
	덕곡리	덕곡리 일원(380-10, 380-28, 478, 479-1, 479-2, 480, 541, 542, 산23-1, 산24, 산27-1, 산27-9번지 등 12필지 9,653㎡ 제외)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4)

사천시 조례 제95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둘째아 출산일” 을 “해당아 출산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호에 따른 별표 1의 출산지원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5)

사천시 조례 제95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6)

사천시 조례 제95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으로,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7)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 당 300원

②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

제18조 중 “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시세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8)

사천시 조례 제95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4조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 을 “공단조성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재정법” 을 “「지방재정법」” 으로, “기금운영관” 을 “기금운용관” 으로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9)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를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따라 쓴다”로 한다.

제7조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 중 “각호로”를 “각 호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사천시재무회계규칙」”로 한다.

제10조 중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를 “제4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용자대상업체) 제10조에 따른 용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사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10인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로 하며, “각호의 1에 해당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공단조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용자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적합한 용도에 한해서 용자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반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10)

제15조제1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금융기관중에서”를 “금융기관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약에 의한다.”를 “협약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내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정할수 있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되”를 “규정에 따른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위원회 구성)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11)

사천시 조례 제95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어촌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어촌체험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서포면 다평리 1286-8번지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 ① 시장은 교육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12)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현저히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제7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교육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교육관 가격평정 이상으로 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교육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13)

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14)

사천시 조례 제95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부과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등) ① 시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

사 전 시 공 보

제276호(15)

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감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제출을 포기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 2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16)

제10조(과태료의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17)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 라.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마.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지 아니 한다.
- 바. 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100	200	300
		100	200	300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100	200	300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18)

[별지 제1호서식]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소재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사 천 시 장 인

(뒷면)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20)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현황	명 칭			종 별	
	개설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위반행위	일 시				
	내 용				
처분내용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21)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의 무 자	개설자		주민등록번호	
	명 칭		소 재 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22)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취소(변경) 내 역	당초지급액	취소(변경)금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23)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납부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근거		납부고지서번호	
	처분내역		과태료 금액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24)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발 신 : 사 천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26조제4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따라 과

태료 처분을 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기준		이의제기일자	

-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 1부.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25)

[별지 제8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처 분 통지일	납 부 기 한	금액	납부의무자		납부일	채납내역		이의제기		비 고
					성 명	주 소		독촉일	납부일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26)

사천시 조례 제95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톤 미만”을 “5톤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톤미만”을 “1톤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제9조의2제2호”를 “제16조제2호”로 하며,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25퍼센트미만”을 “25퍼센트 미만”으로, “40%미만”을 “40퍼센트 미만”으로 며, 같은 조 제13호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청소차”를 “시 청소차”로 한다.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7호 · 제8호 · 제10호 및 제1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 제9호 ·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27)

제11호·제13호 및 제14호 중 “라 함은” 을 각각 “란” 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7조제2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른” 으로 하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를 “제8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사천시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의거” 를 “제27조의2에 따라” 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제12조 및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로 하고, “각호” 를 “각 호”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제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0조제4호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호에 따라” 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0일이내” 를 “30일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며, “각목의 1” 을 “각 목의 어느 하나” 로, “30일 이내” 를 “30일 이내”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4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을 “제9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로 하고, “각호” 를 “각 호” 로 하며, “공모에 의한다” 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다”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5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9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제44조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28)

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인구, 지역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 유입으로 인해 대행지역이 신설 또는 확대된 지역
2.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가 관할한 지역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 시 60점 이하를 받은 업체
대행지역

제14조 중 “연 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시장은 제조업체와”를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와”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재사용 쓰레기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한다.

④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재사용 쓰레기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29)

신설한다.

③ 이 조례를 위반하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며, “기타의” 를 “그 밖의” 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제6호” 를 “제7호” 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6. 가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였을 때

제22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의해” 를 각각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제2항제5호·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기타” 를 각각 “그 밖에” 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5조의2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6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거”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며, “10일이내” 를 “10일 이내”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시장은 가짜 쓰레기 중량제봉투 불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30)

200,000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과태료)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권한을”을 “권한은”으로 한다.

제29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31)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의2 관련)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린 경우	3	3	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	15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	15	2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30	5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린 경우(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	70	100
	바.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10	20	30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8조제3항)	30	70	100
	3. 시의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32)

규 칙

사천시 규칙 제49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운영규칙”을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제28조에 따라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협의회”를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회장으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33)

제5조제1항 중 “각 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 중 “2인” 을 “2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34)

사천시 규칙 제49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사천시 중소기업육
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
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의거”를 “따라”로,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소규모업체중”을 “소규모업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
타”를 “그 밖에”로, “판단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판단되어
조례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35)

제3조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각호와” 를 “각 호와” 로 한다.

제4조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각호와” 를 “각 호와”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를 “제14조에 따라” 로 하고,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며,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을 “제5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용자대상자 및 금액 심의
3. 그 밖에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필요한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 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에 의한” 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각호와” 를 “각 호와”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호와” 를 “각 호와” 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3년” 을 각각 “3년 이내”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7조제2항에 따라” 로, “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36)

지원할 시는”을 “지원할 경우에는”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1월 이내”를 “1월 이내”로 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37)

[별표]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용자한도액(제8조제2항관련)

업체규모별 용도별	상시 종업원수 4명 이하	상시 종업원수 5명 이상 10명 이하 또는 매출액 2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1명 이상 20명 이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21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반운전자금	50백만원	100백만원	150백만원	200백만원
기술개발자금	50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300백만원
시설현대화자금	50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300백만원
지역특화산업자금	50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300백만원

(주) 상시 종업원수 및 매출액 규모 중 업체에 유리한 쪽 적용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38)

[별지 제1호서식]

용 자 신 청 서

업 체 명			
소 재 지		입주 공단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용자 신청액	백만원		법인등록번호
자 금 용 도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업 종 (주생산품)		대 출 회 망 은 행	지점
연간 매출액	내 수	수 출	공 장 규 모 대지: 평 (자가·임대) 건물: 평 (자가·임대)
	백만원	백만원	
자 본	자기자본 : 백만원 타인자본 : 백만원 계 : 백만원	종 업 원	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계 : 명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자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3.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

4.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고용보험가입확인원)

5. 그밖에 공고상 필요한 서류(임대공장은 임대차 계약서)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39)

사천시 규칙 제49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천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7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수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확인 후 별지 제3-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40)

제4조 중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조례 제12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를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로, 같은 조 제5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를 “제5항에 따라” 로, 같은 조 제8항 중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를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7조 중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읍·면장에게”를 “판매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읍·면장” 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1조 중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 중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조례 제26조에 따라” 로, “매월 1인당 3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방법에 따라서 수거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매월 1인당 12리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봉투를 지급하고” 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서식 및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41)

[별지 제2호서식]

신 고 필 증

접 수 번 호 :

품 명 및 수 량 :

처 리 수 수 료 :

배 출 일 시 :

배 출 장 소 :

상기 품명의 수량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44)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1-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 5. 23.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1-3호(2011. 3. 16.)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사천시 서포면 송도~비토도 사이를 1992년 도로개설(지방도 1005호선)로 인하여 해수유통이 단절되어 해양오염과 퇴적이 심화됨으로써, 갯벌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의 기존도로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 갯벌을 복원.
 - 가도(L=111m, B=8m) 및 가물막이(L=126.9m, B=4m)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205-8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 공사기간 : 2011. 5. 23. ~ 2012. 4. 17.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일자 : 2011. 5. 23.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45)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1-300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사 천 시 장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역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곤명	리도	만연선	207	곤명면 신흥리 3-1	곤명면 신흥리 산91-5	0.268	-	8.0	7.0	농어촌 도로정 비사업 시행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가	8	국지 도로	268	곤명면 신흥리 3-1	곤명면 신흥리 산91-5	일반 도로	-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46)

나.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가호선	도로신설 L=268.0m, B=8.0m	농어촌도로 곧명207호선 노선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지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가호선)사업

2) 사업의 명칭 : 연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다. 사업시행 연장 및 폭원 : 도로 확·포장 L=268m, B=8.0m

라. 사업시행자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성 명 : 사천시장

마. 사 업 기 간 : 2011. 2. ~ 2012.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첨부

첨부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부.

사 천 시 영 편

제276호(4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군면면 신홍리	2-9	토	133	14	국 (진실교동부)						
2	군면면 신홍리	2-6	토	79	79	국 (국토해양부)						
3	군면면 신홍리	3-1	토	46	31	국 (국토해양부)						
4	군면면 신홍리	3-10	토	146	58	국 (진실교동부)						
5	군면면 신홍리	5-9	토	392	2	국 (진실교동부)						
6	군면면 신홍리	916	토	269	41	국 (진실부)						
7	군면면 신홍리	산86-10	입	119	119	이노희	사천시 4-6	군면면 신홍리				
8	군면면 신홍리	산86-7	토	515	267	사천시						
9	군면면 신홍리	4	잡	999	53	장염만	사천시 군면면 신홍리 4	군면면 신홍리 4	사천시 866	군면면 봄계리	군면면 봄계리	근저압권, 지상권
10	군면면 신홍리	4-2	토	10	10	장용위	사천시 112	군면면 연샘리				
11	군면면 신홍리	4-33	진	323	53	장염만	사천시 군면면 신홍리 4					
12	군면면 신홍리	4-30	토	849	766	사천시						
13	군면면 신홍리	4-32	진	301	5	장염만	사천시 군면면 신홍리 4					
14	군면면 신홍리	산88-5	입	29,784	321	경민수	진주시 인사동 191-11					
15	군면면 신홍리	산88-8	입	400	366	사천시						

사 전 시 영 본

제276호(48)

납품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6	곡면면 진용리	신88-3	임	1,289	112	국 (국토해양부)						
17	곡면면 진용리	신88-7	임	31	31	사천시						
18	곡면면 진용리	신88-1	임	937	120	정민철	진주시 상대동 198-16					
19	곡면면 진용리	신91-7	임	1,295	237	국 (건설교통부)						
20	곡면면 진용리	2-1	대	375	22	이노희	사천시 관명면 신용리 4-6					
21	곡면면 진용리	4-23	과	580	57	이노희	사천시 관명면 신용리 4-6					
22	곡면면 진용리	4-55	과	328	10	홍기람	진주시 상대동 1086 상용리주타운 5-750호					
23	곡면면 진용리	4-27	대	464	10	유현순	진주시 상대동 1086 상용리주타운 5-1103호					
24	곡면면 진용리	신89-6	임	137	17	사천시						
25	곡면면 진용리	신89-3	임	1,846	23	삼재길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67-16					
26	곡면면 진용리	신89-4	임	198	25	국 (국토해양부)						
27	곡면면 진용리	신89-1	임	3,366	4	삼재길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67-16					
28	곡면면 진용리	신89-5	임	132	105	사천시						
29	곡면면 진용리	신89-7	도	370	125	국 (건설교통부)						
30	곡면면 진용리	신91-5	도	1,703	95	국 (건설교통부)						

사 천 시 공 보

제276호(50)

사 천(001)

